

## 부천시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1. 4. 10
- 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1년 4월 10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88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(2001. 7. 12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청소사업소장 이종훈)

제안이유

-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상위법에서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불필요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을 폐지하여 민원편의증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상위법에서 폐지된 간이축산폐수정화시설 용어를 삭제함(안 제2조제2호)
-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범위를 조정함(안 제2조제3호)
-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 등의 멸실신고 조항 삭제(안 제6조)
- 상위법에서 폐지된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권장 규정을 삭제함(안 제22조)
- 축사의 유지관리에서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함(안 제24조)
- 적용의 베제 중 1마리 이하의 소·말을 1마리 이하의 소·젖소·사슴·말이라고 하고 가축의 용어에 포함되지 않는 3두 이하의 경비견 또는 애완견 동물을 삭제함(안 제26조제24호)
-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조항을 삭제함(안 제27조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·타조 등을 삭용 목적으로 대량 사육하고 있는 농장에서 오·폐수를 무단으로 방류 환경파괴의 원인되고 있는데 개정조례의 가축의 범위에서 빠진 이유는?</li> <li>○ 규칙은 어떠한 사안을 정해도 되고 안정해도 무방한 것 아닌가?</li> <li>○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 조례로 정하는 것 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?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위법에서 정한 가축의 용어 정의에 빠져 있어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다보니 삽입하지 않았으나 조례 시행규칙 운영시 개나 타조 등을 삽입하도록 하겠음</li> <li>○ 네. 하지만 규칙에 필히 삽입하도록 하겠음</li> <li>○ 상위법에서 정한 가축의 용어 정의에 빠져 있어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례로 정하기는 무리임</li> </ul>

- 상위법에서 정한 가축의 용어 정의에 들어 있지 않아 삽입을 못 한다면 단서 규정을 만들어 규제하면 되지 않겠는가?

- 단서규정으로 하면 무방할 것 같음

#### 4. 토론요지

##### 가. 찬성토론

- 없 음

##### 나. 반대토론

- 없 음

#### 5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#### 6. 수정안 요지

- 불 임

#### 7. 소수의견요지

- 없 음

#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### 부천시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 제471호
의결년월일	2001. 7. 14 (제88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7. 12

제 출 자 : 건설교통위원회

#### 1. 수정이유

- 개정조례안 중 “가축”의 용어 정의에 요즘 식용을 목적으로 대량사육되고 있는 개와 타조 등이 빠져있어 오·폐수를 무단 방류하여 환경오염을 발생시켜도 규제할 방법이 없어 단서규정으로 애완동물, 조류 등을 삽입하여 규제코자 함

#### 2. 주요골자

- “가축”의 용어 정의에 단서 규정으로 애완동물, 조류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(안 제2조제3항)

### 부천시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

안 제2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애완동물, 조류,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(생략)</p> <p>3. "가축"이라 함은 소(젖소), 말, 양, 돼지, 닭, 오리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을 말한다. 다만 애완동물, 조류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"가축"이라 함은 소·돼지·젖소·말·닭·오리·양 및 사슴을 말한다.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....</p> <p>....</p> <p>다만 애완동물, 조류,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

### 부천시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471호
의결년월일	2001. 7. 14 (제88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4. 10

제출자 : 부천시장

#### 제안이유

-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 상위법에서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불필요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폐지하여 민원편익증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## 주요골자

- 상위법에서 폐지된 간이축산폐수정화시설 용어를 삭제함(안 제2조제2호)
-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범위를 조정함(안 제2조제3호)
-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 등의 멸실신고 조항 삭제(안 제6조)
- 상위법에서 폐지된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권장 규정을 삭제함(안 제22조)
- 축사의 유지관리에서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함(안 제24조)
- 적용의 배제 중 1마리 이하의 소·말을 1마리 이하의 소·젖소·사슴·말이라고 하고 가축의 용어에 포함되지 않는 3두 이하의 경비견 또는 애완견 동물을 삭제함(안 제26조제24호)
-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조항을 삭제함(안 제27조)

[수정안 포함]

## 부천시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"가축"이라 함은 소·돼지·젖소·말·닭·오리·양 및 사슴을 말한다.

다만, 애완동물, 조류, 기타 오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6조 및 제22조를 삭제하고 제24조 중 "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"를 "가축을 사육하는 자"로 한다.

제2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 등으로 사육하는 1마리 이하의 소·젖소·사슴·말, 3마리 이하의 돼지·양, 5 수 이하의 닭·오리

제27조 및 제37조를 삭제한다.

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"같이축산폐수정화시설"</u>이라 함은 범 제24조  <u>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</u>  <u>설허가 및 신고대상 외의 축산시설에서 배출</u>  <u>되는 축산폐수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설치</u>  <u>하는 시설을 말한다.</u></p> <p>3. "가축"이라 함은 소(젖소), 말, 양, 돼지, 닭,  <u>오리,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을</u>  <u>말한다. 다만 애완동물, 조류,</u>  <u>기타 오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에 대하여</u>  <u>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u></p> <p>4. 및 5. (생략)</p> <p>제6조(오수처리시설 등의 면제신고) ①오수처리시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&lt;삭제&gt;</p> <p>3. "가축"이라 함은 소·돼지·젖소·말·닭·오리·  <u>양 및 사슴을 말한다. 다만, 애완동물, 조류,</u>  <u>기타 오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에 대하여</u>  <u>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u></p> <p>4. 및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&lt;삭제&gt;</p>

설을 멀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멀실신고를 하여야 한다. 단, 건축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멀실신고를 한 자는 오수처리시설 멀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건축물 멀실신고 담당부서에서는 그 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멀실신고가 된 시설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후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.

제22조(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관리) 시장은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4조(축사의 유지관리) 가축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가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26조(적용의 범위) (생략)

1. ~3. (생략)

4.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 등으로 사육하는 1마리 이하의 소·말, 3마리 이하의 돼지·양, 5수 이하의 닭·오리, 3두 이하의 경비견 또는 애완견 동물

5. (생략)

제27조(분뇨관련영업의 허가) 시장은 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·운반하고 청소차량, 오수처리시설 및 청소종사원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과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명하여야 한다.

2. 소독기 1초 이상

제22조<삭제>

제24조(축사의 유지관리) 가축을 사육하는 자....

제26조(적용의 범위) (현행과 같음)

1. ~3. (현행과 같음)

4.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 등으로 사육하는 1마리 이하의 소·젖소·사슴·말, 3마리 이하의 돼지·양, 5수 이하의 닭·오리

5. (현행과 같음)

제27조<삭제>

제37조(권한의 위임) 시장은 법, 영, 시행규칙 및  
이 조례에 의한 권한을 구청장, 동장(단, 도당동  
장, 중1동장, 심곡분1동장, 오정동장 제외)에게  
위임할 수 있다.

별지 제5호서식 <오수·분뇨처리시설 멸실신청서>

제37조<삭제>

별지 제5호서식<삭제>